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•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・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140 2015. 3. 13.(금) 건설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임순묵 의원 등 7명

나. 발의일자 : 2015년 2월 23일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2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3월 3일

(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임순묵 의원)

가. 제안이유

O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장사무 규정상 정무부지사 소관 위원회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,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O '재난' → '재난관리'로 용어 통일(안 제7조)
- O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변경(안 제8조)
 - 행정부지사 →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: 고규식)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○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○ 분장사무 규정 상 정무부지사 소관 위원회임에도 현행 조례에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-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-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없 음"
- 5. 토 론 요 지: "없음"
- 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 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 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O 「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·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·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"재난업무"를 각각 "재난관리 업무"로 한다. 제8조제3항 중 "행정부지사"를 "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"로, "재난업무"를 "재난관리 업무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"재난업무"를 "재난관리 업무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7조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을 효율 | 제7조(회계공무원) ① |
| 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| |
|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 | |
| 1. 기금운용관 : <u>재난업무</u> 담당국장 | 1 재난관리 업무 |
| 2. 분임 기금운용관 : <u>재난업무</u> | 2 <u>재난관리 업무</u> |
| 담당과장 | |
| 3. 기금출납원 : <u>재난업무</u> 담당사 | 3 <u>재난관리 업무</u> |
| 무관 |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| 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・② | 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・② |
| (생 략) | (현행과 같음) |
| ③위원장은 <u>행정부지사</u> 가 되고, | ③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 |
| 부위원장은 <u>재난업무</u> 담당국장이 | <u>하는 부지사</u> - 재난관리 업무 |
| 된다. | |
| ④ ~ ⑥ (생 략) | ④ ~ ⑥ (현행과 같음) |
| ⑦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 | ⑦ |
| 여 간사 1명을 두되, <u>재난업무</u> 담 | <u>재난관리 업무</u> |
| 당사무관이 된다.[제6항에서 이동 | |
| <2015. 1. 1>] | _ |